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고 병 준 의원)

의안 번호	24-115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

발 의 자 : 고병준, 강동오, 권영숙,
남해석, 백남환, 안미자
이상원

1. 개정이유

본 조례의 규정된 청년의 연령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조례」
개정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을 확대
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청년을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정의함(안 제2조제1호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및 제4조
- 나.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제2조
- 다.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9. 12. ~ 9. 22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”로, “말한다”를 “말한다. 다만,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청년“이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와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</u>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<u>말한다</u> .	1.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</u> ----- ----- <u>말한다. 다만,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개정
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송강미
연 락 처	02-3153-8552

【관 계 법 령】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[시행 2023. 12. 31.] [법률 제19940호, 2023. 12. 31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체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
[시행 2022. 2. 18.] [대통령령 제32447호, 2022. 2. 17., 타법개정]

제2조(청년의 나이)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”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